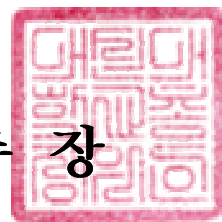


학 칙 개 정 공 포

본 대학교 학칙이 학칙개정안 공고(2010.06.15
- 21), 교무위원회 심의(2010.06.28) 절차를 완료
하여 개정 학칙이 붙임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공포
합니다.

2010. 6. 29.

대 신 대 학 교 총 장



학칙개정 사유

본 학칙을 신설, 개정하므로 학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교육의 효율성제고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부(과) 모집증지 및 폐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사업무에 반영하고자 함.

□ 본 대학교 2011학년도 입학정원 내 학과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제3조의 학부(과) 및 정원에 관한 <별표 1>의 2011학년도 입학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임.

<별표1> 2011학년도 입학정원

모집계열	학 부(과)	입학정원	비 고
인문 사회 계열	신 학 과	50명	
	사회복지학과	20명	
	상담문화영어학부	20명	
	(영어영문학, 상담심리언어전공)		
예능계열	음 악 학 부		
	기악전공(피아노,관현악,플루트)		
	교회음악전공(성악,작곡,오르간,합창지휘)	50명	
	실용음악전공(워십리더,보컬,기타, 베이스,드럼,키보드)		
계		140명	

□ 본 대학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연구한 『대신대학교 연혁』 공식연혁으로 채택되어 본 대학교 개교기념일을 10월5일에서 4월12일로 수정하여 본 대학교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학칙을 개정하고 함.

□ 본 대학교 2011학년도 입학정원 조정되어 제51조 ①항의 학사학위 종류를 <별표 2>와 같이 개정하여 학사업무에 반영하고자 함.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음 악 학 부	음악학사

□ 대학 본부의 직제의 변경으로 자체평가기획위원장 및 자체평가연구위원장에 기획처장으로 개정하여 평가팀장에 기획팀장으로 하며 업무에 반영하고자 함.

□ 시대적 요청에 의해 본 대학교 부속 및 부설교육기관을 개편하여(변경, 삭제)지역사회 및 교회와 연계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하여 학칙 81조를 변경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함.

학칙개정 주요골자

1. 학칙 제3조(학부(과) 및 정원) 내용 중 입학정원을 조정하고자함.
2. <별표1> 2010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165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여 총 입학정원을 140명으로 하고, 학과 조정안은 신학과 50명,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폐과하고, 교회음악과를 음악학부로 변경하고 정원 50명, 사회복지학과(20명)와 상담문화영어학부(20명)는 동결하며 2011학년도 입학정원을 1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3. 학칙 제3조 ②,③항을 신설은 학교 운영을 내실화 하기위하여 개정하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4. 학칙 제8조 내용 중 개교기념일을 4월12일로 수정하여 본 대학교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개정하고 함.
5. 학칙 제51조 내용 중 학사학위 종류를 <별표 2> 정리하여 학사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6. 학칙 제79조 내용 중 자체평가기획위원장 및 연구위원장에 기획처장으로 평가팀 팀장은 기획팀장으로 하며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7. 학칙 제81조 내용 중 교역자·평신도훈련원을 목회신학원으로 변경하며, 유치원은 대구신학원 정관 제3조(설치학교) ②항의거하여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본 대학교 부설교육기관으로 된 유치원을 삭제·정리하여 업무에 반영 하고자 함.

학칙 개정안

대신대학교 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학부(과) 및 정원) ①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부(과) 및 별표1과 같다. 다만, 정원 외 입학정원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2011학년도 입학정원

모집계열	학 부(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50명
	사회복지학과	20명
	상담문화영어학부(영어영문학, 상담심리언어전공)	20명
예능계열	음 악 학 부 기악전공(피아노,관현악,플루트) 교회음악전공(성악,작곡,오르간,합창지휘) 실용음악전공(워십리더,보컬,기타, 베이스,드럼,키보드)	50명
계		140명

② 설치한 학부(과)에 관한 폐과 및 학생모집 중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폐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 7.1>

③ 학부(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기준은 교무위원의 심의와 최종 의결하여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10. 7.1>

제8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하계 및 동계방학

2.개교기념일(4월12일)<개정 2010. 7.1>

3.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제51조 (졸업·학위) ①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후 각 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포함)의 심사에 통과 되어 별표2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별표 2> 학사학위 종류<개정 2010. 7.1>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음 악 학 부	음악학사

제79조 (평가기구 구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처장으로 한다.

2. 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

② 총장은 자체평가의 계획, 실시, 보고서작성,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 있는 교수와 행정위원 등 10명 내외로 한다.

2. 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

③ 총장은 자체평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평가팀을 둔다.

1. 평가팀은 행정직원 1명, 팀장 1명을 둔다.

2. 팀장은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

제81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목회신학원<개정 2010. 7.1>

3. 생활관

4. 학생생활연구소

5. 교회·선교문제 연구소

6. 교회음악 연구소

7. 어학연구소

8. 학보사

②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삭제<2010. 7. 1>

2. 평생교육원

③ 부속 및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학부(과) 및 정원)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정원 외 입학정원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1> 2010학년도 입학정원 <table><tr><th>모집계열</th><th>학 과</th><th>입학정원</th></tr><tr><td rowspan="4">인문사회 계 열</td><td>신 학 과</td><td>60명</td></tr><tr><td>사회복지학과</td><td>20명</td></tr><tr><td>관광정보영어학부(영어영문학, 관광정보영어전공)</td><td>20명</td></tr><tr><td></td><td></td></tr><tr><td>사범계열</td><td>유아교육과</td><td>20명</td></tr><tr><td>예능계열</td><td>교회음악과 (피아노,오르간, 작곡, 성악,관현악, 플루트, 실용교회음악전공)</td><td>45명</td></tr><tr><td colspan="2">계</td><td>165명</td></tr></table>	모집계열	학 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60명	사회복지학과	20명	관광정보영어학부(영어영문학, 관광정보영어전공)	20명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20명	예능계열	교회음악과 (피아노,오르간, 작곡, 성악,관현악, 플루트, 실용교회음악전공)	45명	계		165명	제3조(학부(과) 및 정원) ①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부(과)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정원 외 입학정원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1> 2011학년도 입학정원 <table><tr><th>모집계열</th><th>학 과</th><th>입학정원</th></tr><tr><td rowspan="4">인문사회 계 열</td><td>신 학 과</td><td>50명</td></tr><tr><td>사회복지학과</td><td>20명</td></tr><tr><td>상담문화영어학부(영어영문학, 상담심리언어전공)</td><td>20명</td></tr><tr><td></td><td></td></tr><tr><td rowspan="4">예능계열</td><td>음악학부</td><td rowspan="4">50명</td></tr><tr><td>기악전공(피아노,관현악,플루트)</td></tr><tr><td>교회음악전공(성악,작곡,오르간,합창지휘)</td></tr><tr><td>실용음악전공(워십리더,보컬,기타, 베이스,드럼, 키보드)</td></tr><tr><td colspan="2">계</td><td>140명</td></tr></table>	모집계열	학 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50명	사회복지학과	20명	상담문화영어학부(영어영문학, 상담심리언어전공)	20명			예능계열	음악학부	50명	기악전공(피아노,관현악,플루트)	교회음악전공(성악,작곡,오르간,합창지휘)	실용음악전공(워십리더,보컬,기타, 베이스,드럼, 키보드)	계		140명				
모집계열	학 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60명																																													
	사회복지학과	20명																																													
	관광정보영어학부(영어영문학, 관광정보영어전공)	20명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20명																																													
예능계열	교회음악과 (피아노,오르간, 작곡, 성악,관현악, 플루트, 실용교회음악전공)	45명																																													
계		165명																																													
모집계열	학 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50명																																													
	사회복지학과	20명																																													
	상담문화영어학부(영어영문학, 상담심리언어전공)	20명																																													
예능계열	음악학부	50명																																													
	기악전공(피아노,관현악,플루트)																																														
	교회음악전공(성악,작곡,오르간,합창지휘)																																														
	실용음악전공(워십리더,보컬,기타, 베이스,드럼, 키보드)																																														
계		140명																																													
②<신설 2010. 7.1> ③<신설 2010. 7.1>	② <u>설치한 학부(과)에 관한 폐과 및 학생모집 중지</u>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폐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u>학부(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기준은 교무위원의 심의와 최종 의결하여 총장이 결정한다.</u>																																														
제8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하계 및 동계방학 2.개교기념일(10월5일) 3.<현행과 같음>	제8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하계 및 동계방학 <u>2.개교기념일(4월12일)<개정 2010. 7.1></u> 3.<현행과 같음>																																														
제51조 (졸업·학위) ①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후 각 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포함)의 심사에 통과 되어 별표2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별표2> 학사학위 종류 <table><tr><th>계 열</th><th>학 부(과)</th><th>학위종류</th></tr><tr><td rowspan="6">인문사회 계 열</td><td>신 학 과</td><td>문학사</td></tr><tr><td>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td><td>문학사</td></tr><tr><td>사 회 복 지 학 과</td><td>문학사</td></tr><tr><td>관광정보영어학부</td><td>문학사</td></tr><tr><td>상담문화영어학부</td><td>문학사</td></tr><tr><td>실 용 영 어 과</td><td>문학사</td></tr><tr><td>사범계열</td><td>유 아 교 육 과</td><td>문학사</td></tr><tr><td>예능계열</td><td>교 회 음 악 과</td><td>음악학사</td></tr></table>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제51조 (졸업·학위) ①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후 각 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 포함)의 심사에 통과 되어 별표2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별표2> 학사학위 종류 <table><tr><th>계 열</th><th>학 부(과)</th><th>학위종류</th></tr><tr><td rowspan="6">인문사회 계 열</td><td>신 학 과</td><td>문학사</td></tr><tr><td>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td><td>문학사</td></tr><tr><td>사 회 복 지 학 과</td><td>문학사</td></tr><tr><td>관광정보영어학부</td><td>문학사</td></tr><tr><td>상담문화영어학부</td><td>문학사</td></tr><tr><td>실 용 영 어 과</td><td>문학사</td></tr><tr><td>사범계열</td><td>유 아 교 육 과</td><td>문학사</td></tr><tr><td rowspan="2">예능계열</td><td>교 회 음 악 과</td><td>음악학사</td></tr><tr><td>음 악 학 부</td><td>음악학사</td></tr></table>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음 악 학 부	음악학사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 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음 악 학 부	음악학사																																													

제79조 (평가기구 구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처장으로 한다. 2. 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입학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총장은 자체평가의 계획, 실시, 보고서작성,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 있는 교수와 행정위원 등 10명 내외로 한다. 2. 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입학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총장은 자체평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평가팀을 둔다. 1. 평가팀은 행정직원 1명, 팀장 1명을 둔다. 2. 팀장은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9조 (평가기구 구성)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처장으로 한다. 2. 자체평가기획위원장은 <u>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u> ② 총장은 자체평가의 계획, 실시, 보고서작성,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둔다. 1.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성 있는 교수와 행정위원 등 10명 내외로 한다. 2. 자체평가연구위원장은 <u>기획처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u> ③ 총장은 자체평가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평가팀을 둔다. 1. 평가팀은 행정직원 1명, 팀장 1명을 둔다. 2. 팀장은 <u>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 7.1></u>
제81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교역자·평신도훈련원 3. ~8 <현행과 같음> ②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유치원 2. 평생교육원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u>목회신학원<개정 2010. 7.1></u> 3. ~8 <현행과 같음> ②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교육기관을 둔다. 1. <u><삭제>< 2010. 7.1></u> 2. 평생교육원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과된 유아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유아교육과가 폐과됨에 따라 2010학년도까지 입학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3.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입학한 교회음악과 재적생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교회음악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